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67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근거 마련	3
2. 위반사실 공표 기간 및 방법 상향입법	11

I. 개요

1.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6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경숙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포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5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7조의2(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요양기관, 대행청구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7조¹⁾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²⁾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즉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부정청구 적발 절차³⁾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보·신고 등에 따라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이나 감시시스템에 따라 때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선정하여 현행법 제97조제2항⁴⁾에 따라 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 등 사후 절차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현행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부정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27개소, 2023년 514개소, 2024년 612개소 요양기관의 부정청구가 확인되었음.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는 ‘부당’의 의미는 속임수를 쓰는 등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즉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었을 경우 부당청구로 인정한다는 설명임.

3) 참고1. 부당청구 적발절차

4)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부정청구 적발 현황>

(단위 : 개소)

조사년도	전체 요양기관수	조사 기관 수	부당 기관 수
2024	103,308	730(0.7%)	612
2023	101,762	674(0.7%)	514
2022	100,396	610(0.6%)	527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청구에 대한 감시방안이 환자 등의 제보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됨⁵⁾에 따라, 개정안은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청구를 방지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제97조제2항⁶⁾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바,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정기적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비용⁷⁾이 발생하는 점과 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2025.10.17.) 회의록 p.137

6)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관련 예산 및 인력 변동이 가능하므로, 실태조사의 범위가 모호해 관련 인력 및 예산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임. 참고로, 현재 매월 이루어지는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인력(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80명임.

8)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질 저하, 의료인력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함.

- 아울러, 건강보험 외에 다른 4대보험 관련 개별 법률(「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별도의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라 부정청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대상인 “부정청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현행법 제57조제1항⁹⁾을 인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97조의2제2항 후단은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전단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개정안의 실태조사는 부당청구에 대한 부당금액 환수 및 행정처분이 가능한 현행 행정조사(현지조사)와 중복되며, 별도의 조사실익이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지조사는 민원 제보(요양기관 관련자, 이용자, 그 밖의 신고인), 대외 의뢰(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보험심사평가원 등),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선정 등을 통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 질문, 관계 서류 검사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인 부정청구 관리·감독 및 거짓청구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기능을 기 수행하고 있음.

- 한편, 현지조사 외에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위반 청구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를 운영 중이며, 요양급여 청구행태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사전예방활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도 부당청구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실익이 부족하며 업무 중복이 우려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 수 대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수는 전체의 0.6~0.7% 수준이며, 경미한 청구 실수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를 제외하면 거짓·허위 청구는 매우 낮은 수준임.
- 현행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건보공단 방문확인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에 있어, 현행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실태조사의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 담보에 한계가 있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임.

□ 대한의사협회

- 현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등 여러 단계에 걸친 과도한 조사를 이미 받고 있음. 이 과정에서 각종 자료 제출·소명 절차가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이 부족한 동네의원의 경우 하루 진료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행정 부담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3년마다 정례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진료 질 저하, 의료인력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강력 반대함.

□ 대한병원협회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서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 명령과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현지조사)는 정기·상시 실시되고 있어 개정안은 현행 법률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은 행정조사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적법·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를 시행하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자료 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운영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행위와 요양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시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개정안과 같이 기존 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실태조사는 제도와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은 “환자 개인별 임상적 상태”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3년 단위 실태조사보다는 현행과 같이 개별 행정조사 방식이 적합함. 반면, 개정안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구내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어 이는 행정력의 비효율적 운영과 전체 요양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참고1

부당청구 적발절차



자료 : 보건복지부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다른 게시판 등에도 게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추가적인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공표의 절차-----

-----.

※ 시행일: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0조¹⁰⁾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

10)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공표의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¹¹⁾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외에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5년 간(2021년~2025년) 총 143개의 요양기관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졌음.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알림

공지사항

입찰안내

보도자료

보도설명

포토뉴스

요양기관 현지조사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공표

협동조합경영공시

팝업존

공표명단현황

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 기관 종류	대표자의 면허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표일
1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중량청구		의원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중량청구	과징금 107,077,200원	2025-11-27
2	내원일수 거짓청구		한의원			내원일수 거짓청구	과징금 248,267,250원	2025-11-27
3	내원일수 거짓청구, 검사료 거짓청구		한방병원			내원일수 거짓청구, 검사료 거짓청구	과징금 205,885,950원	2025-11-27
4	내원일수 거짓청구, 한방시술료 거짓청구		한의원			내원일수 거짓청구, 한방시술료 거짓청구	과징금 124,663,400원	2025-11-27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claimList.es?mid=a10507010200>)

< 최근 5년간 거짓청구 공표 기관 수 >

연도	'21	'22	'23	'24	'25	계
공표기관 수	25	30	25	29	34	143

자료 : 보건복지부

□ 이러한 위반사실의 공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해관계단체¹²⁾에 따르면 공표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 신뢰가 무너져 사실상 영업 정지에 준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인데, 이와 같은

12) 대한의사협회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공표 기간(6개월)과 방법(홈페이지 공고 또는 신문·방송 추가 공표)을 상향입법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환경 변화에 맞춘 신속한 개정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 공표 방법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다수 유사입법례¹³⁾에서 공표의 절차, 방법(공표기간 포함) 등을 하위 법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의 세부기준,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14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제55조의2·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법 위반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입법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제2항 및 제3항에서 공표기간(6개월)과 추가 공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반사실 공표 기간도 시행령에 6개월로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공표기간(6개월)을 명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의약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제5항에서는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공표대상 기관에 대하여 6개월간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 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사항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중 공표방법에 대하여만 상위규정인 법률에 규정토록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대한의사협회

- 공표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 신뢰가 무너져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공표 기간을 법으로 6개월로 고정하고, 신문·방송 공표까지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 착오나 행정 오류까지도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에 무혐의로 밝혀져도 명예 회복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문제임.
- 또한, 실태조사 확대와 공표 강화에는 인력·예산이 필수적으로 투입되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정을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데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동 개정안에 강력 반대함.

문 의 처
02)6788-5503